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6.9.29.(목) 16:30 - 18:20	장 소	성북배움터(구청 3층)
참석자	15명(김경옥, 김은애, 김수정, 김지희, 박다혜, 손민호, 유의선, 윤성봉, 윤정섭, 이경선, 이경환, 이민영, 이진수, 전문수, 하장호)		
회 의 내 용			
<p>○ 회의시작</p> <p>○ ○○○ : 인권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설명, 『인권도시 성북』 전략 과제 설명함.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많기도 하고 지금까지 성과들이 있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워크숍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인권센터 2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자리에)배부되었다. 인권위원회의 활동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p> <p>인권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인권센터 시민위원도 민관거버넌스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업무로는 주민인권학교 2회, 직원인권교육 2회, 구청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복지시설종사자나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위한 교육도 1년에 2차례 진행한다. 구 안에 계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정책사업의 형태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도 있다. 분야별 인권실태조사로는 2015년에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조례에 의해서 해왔던 것 이외에 정책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있고, 성북구에서 제도적으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권영향평가가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이 중요하고 많은 권고가 나오기도 한다. 오늘도 3건이 심의 상정되어 있다. 조례가 제 개정될 때, 투표할 때 투표소도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1년에 한번씩 정도는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하였다. 성북구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나 인권침해가 상종하고 있다고 본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세출예산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안암동 인권청사를 지을 때를 계기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권축제를 진행하기도 했다.</p>			

회 의 내 용
○ 연장자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출(연장자:○○○위원)
○ ○○○ : 위원장 선출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추천바람. 한분만 추천되면 위원들 재청으로 추대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 ○○○ : 추천이 여러명 된다면 투표를 해야할 것 같다. 만약 합의 추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를 해야할 것 같다.
○ ○○○ : 위원장으로 자원할 분이 있는지 의사를 물어보면 좋겠다.
○ 여러 위원들 추천했으나 추천 위원 모두 개인적 사정으로 고사함
○ ○○○ : 위원장을 오늘 꼭 뽑아야 하는 것인가
○ ○○○ : 위원장은 정례회의 시 회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
○ ○○○ : 인권위원장은 다소 상징성이 있는 분으로 인권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
○ ○○○ : 위원장은 연임하신 분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
○ ○○○ : 위원장 선출이 어려운 것 같다. 그렇다면 위원장의 임기를 좀 줄여서 6개월 정도라도 말고 그 다음에 다시 위원장을 뽑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일종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
○ ○○○ : 연장자가 위원장을 하지 않고 박다혜위원이 위원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 : 전원동의
○ ○○○ : 위원장의 임기를 1년 정도로 정하고 위원장직을 수락하도록 하겠다
○ ○○○ : ○○○위원 위원장 선출 선포함
○ ○○○ : 부위원장 추천 바람
○ ○○○ : ○○○위원 추천
○ ○○○ : 전원동의
○ ○○○ : ○○○위원 부위원장 선출 선포
○ ○○○ : 보고사항부터 들도록 하겠다.
○ ○○○ : 주요업무 보고
○ ○○○ : 주요업무 보고
○ ○○○ : 심의사항이 3건 있다. 인권센터에서 심의를 한 상태이다.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기금관리 기본조례,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인권센터에서 검토의견을 정리했다. 위원회 성비구성에 관한 문제와 위원해촉 사유에 관한 내용에 차별적 사유가 들어가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 놓

회 의 내 용

은 상태이다.

- ○○○ : 이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가
 - ○○○ : 의견없음
 - ○○○ :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위원회 명단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공개할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겠다.
 - ○○○ : 이름, 사진, 소속, 대표경력 이 정도가 공개되었다. 어떻게 생각 하나.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들이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 ○○○ : 주요 경력을 본인이 생각해보고 보낸 것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
 - ○○○ : 소속의 경우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개대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 ○○○ : 직위나 소속은 교수, 교사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하고, 경력사항에는 현 소속기관을 쓰면 될 것 같다.
 - ○○○ : 회의일정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계속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의회도 아니고. 회의와는 상관없이 다음회의 때 10분 정도 학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 : 위원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많은 영역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따로 날짜를 잡아서 진행해 봐도 될 것 같다. 다음 회의 때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진행해도 될 것 같다. 또 이어서 다음회의 때 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주셨는데 조례로 규정된 역할이 있을 것이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역할도 있는 건지. 어떤 지향점을 슬로우건처럼 내걸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 ○○○ :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 ○○○ : 정례회의 일정을 고정시켜서 정하면 좋겠다.
 - ○○○ : 정례회의 일정은 2번째 수요일 16:00로 함
 - ○○○ : 동의함
 - 회의종료
- ※ 회의내용 중 주요논의 및 의견사항에 대해 요약 작성하였음.